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06 발의연월일: 2020. 10. 22.

발 의 자:유기홍・김철민・이정문

인재근 • 박찬대 • 서동용

이학영 · 윤영덕 · 이탄희

강민정 • 권인숙 • 강득구

정청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전의「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과학기술 분야 R&D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학술진흥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에 대해서도연구노트 작성·관리 의무가 부과됨.

그러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대학교육 혁신, 인력 양성, 산학

협력 등 사업별 고유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비의 용도를 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우며,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도 학문분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등 연구현장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기획,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사업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사업비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더불어 학문분야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까지 연구노트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연구몰입도를 높이고자 하는 법 취지에도 배치됨.

이에 「학술진흥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인문·사회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노트 작성 등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35조).

법률 제 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34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① 이 법은 전액 연구개발 예산으로 분류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문분야의 특성상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343호	법률 제1734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 <u><신 설></u>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전액
	연구개발 예산으로 분류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u>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u> 에 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u>나에 해당하는 사업</u>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	
터 <u>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u>	<u>제15조</u>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	<u><삭 제></u>

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지 ① (생 략)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 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 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세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현행과 같음)
2
다만,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
발사업 및 학문분야의 특성상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하는 사업의 경
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혀해과 간음)